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14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안년월일 : 2006년 6월 7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및 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 의정 활동비 : 매월 1,100,000원 지급
 - 월 정 수 당 : 매월 1,816,000원 지급
 - 국내외 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금액 기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등) ①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②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③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소 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916,000	1,100,000	900,000	200,000	1,816,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부천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 (2) 남·북아메리카주: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 (3) 유럽주: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 (4) 중동·아프리카주: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카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3) 유럽주: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